




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

정책실명제 등록번호	2014-37	담당부서 작성자	문화재청 / 근대문화재과 (장철호/042-481-4892/ krjcho@ocp.go.kr)
정 책 명	예비문화재제도 도입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		
사업개요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예비문화재란?</p> <p>○ 김연아 올림픽 스케이트, 박세리골프채 등과 같이 건설, 제작, 형성 된지 5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, 현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함은 물론 미래가치까지 지니고 있는 물건이나 건축물 등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p>88올림픽 골령쇠</p>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p>김연아 올림픽스케이트</p>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p>박세리 골프채</p> </div> </div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배경</p> <p>○ 건설, 제작, 형성 된지 5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, 현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함은 물론 미래가치까지 지니고 있는 물건이나 건축물 등의 훼손·멸실 방지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내용 : 예비문화재 제도도입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※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문화재보호법제59조의2(예비문화재의 선정) ①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가 아닌 현대시기의 문화재 중에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을 예비문화재로 선정할 수 있다. ②예비문화재의 기준·절차·조사 및 경비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</p> </div>		
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경과</p> <p>○ '12.10월 : 예비문화재 제도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실시 - 근대문화재 과장 김상구, 사무관 김준호, 주무관 이소연</p> <p>○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(새누리당 이상일의원) : '13.3월 - 근대문화재 과장 김상구, 사무관 김준호</p> <p>○ 국회 교문위 계류 중 : '14.4월 - 근대문화재 과장 김상구, 사무관 김준호</p>		